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안내

MSDS, 이렇게 작성·제출하세요!

M



S



D



S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정 안내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MSDS 제도 요약

구분	내용	과태료
MSDS 작성	작성 주체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수입자 ②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MSDS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 명칭·함유량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확인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재 항목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성분 ※ 유해·위험하지 않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은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	
MSDS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은 별도로 공단에 제출 ※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가 부여됨	
MSDS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 *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조·수입자로부터 변경된 MSDS를 제공받는 경우,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제공	MSDS 미제공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된 MSDS 미제공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비공개 승인 심사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국외제조자는 국내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MSDS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 가능	선임자로서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수입자에게 MSDS 미제공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MSDS 게시·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MSDS를 게시·비치,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MSDS 교육 실시	MSDS 미게시·비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MSDS 교육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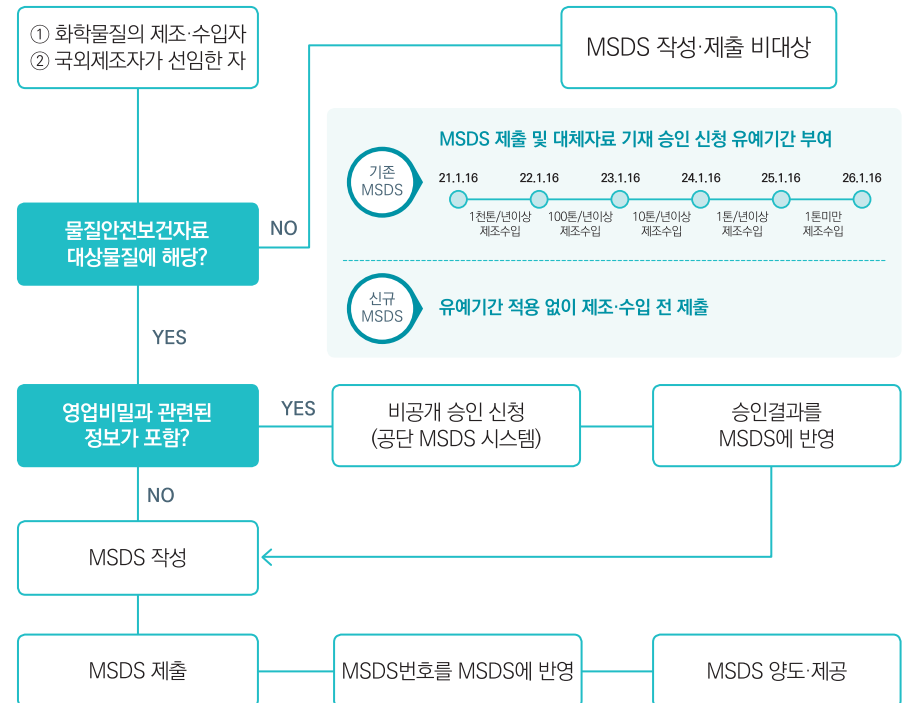
관련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114조

-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5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 절차



※ 단, 연구개발용 물질의 경우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작성 및 비공개 승인 신청은 해야함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01 MSDS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 MSDS 작성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 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MSDS 작성 메뉴를 통하여 작성 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 - MSDS 작성 - 신규작성

* 회원가입 필요

02 MSDS 작성·제출 주체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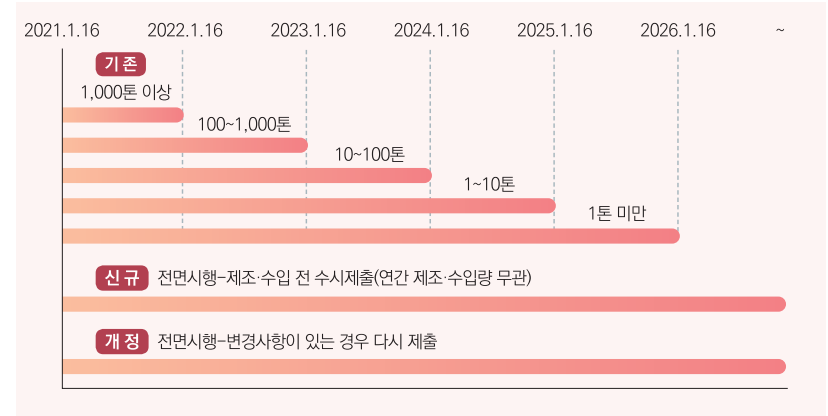
03 제출서류 목록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 ①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② 수입품의 경우,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국외제조자로부터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참고)

04 MSDS 제출 시기



1. 기존 작성 MSDS(‘21.1.16. 이전부터 작성되어 유통되고 있던 MSDS)인 경우

위 표를 확인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에 따라 부여되는 유예기간 내에 제출 (단, 중간제품 제조자의 경우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인 2026년 1월 16일까지 제출 가능)

*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은 법 시행일 전년도(2020년)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함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조~제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제11조

2. 신규 작성 MSDS(‘21.1.16. 이후 신규로 작성된 MSDS)인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단, 중간제품 제조자의 경우 종전법에 따라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해도 제도 이행으로 간주)

* 신규제도를 이행한 MSDS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간제품의 MSDS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함

3.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

- ① 제품명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 ③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05 MSDS 제출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의 MSDS 제출 메뉴를 통하여 제출 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 MSDS 제출 - 최초 MSDS 제출

* 회원가입 필요

06 MSDS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

-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②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④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 ⑤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 ⑦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⑧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⑨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품외품
- ⑩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 ⑪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 ⑫-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⑫-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 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⑭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 ⑮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2.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3.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①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 ②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 작성(비공개 승인 심사 포함)은 해야 함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인 경우란?

-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 ③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 ④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 ⑤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07 유의사항

1. MSDS 제출 시 제품명, 제조자/공급자 정보, MSDS 제·개정일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 48가지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50호 <별표5> 용도분류체계 참고
2. MSDS를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제공 가능

“
**영업비밀을 보호받고 싶다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01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유해·위험성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대체자료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심사 기준 : ①비공개 타당성 ②대체자료의 적합성 ③MSDS의 적정성

02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자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03 제출서류 목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

- 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 ② 대체자료
- ③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⑤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⑥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비공개신청 - '영업비밀 입증자료 작성 도우미' 참고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① 및 ⑥의 자료를 생략 가능

3-1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란?

[법적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5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7>

가. 비공개성

- 1)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범위
- 2)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나. 비밀관리성

- 1)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
- 2)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다. 경제적 유용성

- 1)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 2)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3-2 대체자료란?

대체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가. 대체명칭

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총칭명의 명명방법'을 준용하여 작성
 ※ 화학식과 구조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나. 대체함유량

- ①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이상인 경우 ±20퍼센트포인트(%P) 범위 이내로 기재
- ②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10퍼센트포인트(%P) 범위 이내로 기재

04 MSDS 비공개 승인 신청 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전

(MSDS 제출 시기와 동일하나, 제출 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 상에 대체자료로 기재 가능)

※ 5페이지 MSDS 제출시기 표 참고



05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의 비공개 신청 메뉴를 통하여 신청 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 비공개 신청 - 비공개 신청

* 회원가입 필요

06 처리 절차



※ 승인 심사 시 1개월 소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2주 소요)

07 신청 시 주의사항

1. 승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2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되어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2. 승인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4.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연장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08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인은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승인 여부가 재결정됩니다.
4.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09 MSDS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

[법적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5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6조(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 ① 산안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 ② 산안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 ④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 *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8-232호)이면서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

“ 국외제조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01 국외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입업체를 대신해 MSDS 제출, MSDS 외 구성성분 제출 또는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02 국외제조자 선임자의 조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 그 소재지를 의미)를 가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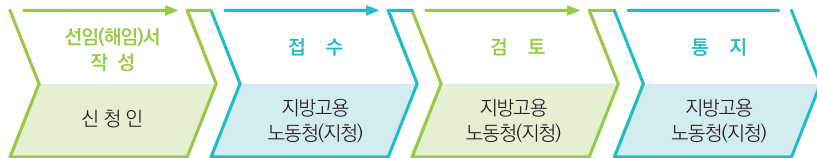
03 국외제조자 선임자의 수행 가능 업무

1. MSDS 작성·제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 제출
3.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 이의신청 등

04 국외제조자 선임자의 의무사항

1.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해임된 사실을 관할노동청(지청)에 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신고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와 함께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 및 선임, 해임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 관할노동청(지청)확인 : 고용노동부민원마당>민원정보>관할관서찾기>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신고증 발급 처리절차]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그 외 선임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홍보자료 찾아보기

'21.1.16.부터 시행된 MSDS 제도와 관련된 동영상은
 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https://msds.kosha.or.kr) → 정보포탈 → 자료실 → 관련 자료 확인

MSDS 제도 관련 문의 : 1555-6080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